

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

이 홍 로

(교통안전공단 교수·박사)

1. 머리말

위 제목의 적용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.

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(보행자의 보호)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.

-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(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)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다.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면 되고, 차량의 진행 신호일 때, 즉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그 곳은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이 상실된다. 신호기

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에 이르면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안전운전을 하면 된다.

2. 관련 핀례

- 가.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의 등화가 고장인 때에도 횡단보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로 인정된다.(89도1696)
- 나.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로 상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리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.(92도2077)
- 다. 횡단보도 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사고시 손수레는 보행자로 간주한다.(90도761)

3.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의 성립요건

항 목	내 용	예 외 사 항
1. 장소의 요건	• 횡단보도 내	• 보행자 정지신호 때의 횡단보도
2. 피해자의 요건	•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자동차에 충격 되어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	• 보행자 정지신호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일어난 사고 •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고 들어누워 있거나, 교통정리, 싸우던 중, 택시 잡던 중 등 보행의 경우가 아닌 때
3. 운전자의 과실	•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•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, 밀려나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• 보행신호시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건너던 중 주의신호 또는 정지신호된 상황에서 마저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	•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정지신호에 건너던 중 일어난 사고 •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변경되어 중앙에서 있던 중 일어난 사고 •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 변경되어 되돌아 가던 중 일어난 사고
4. 시설물 설치요건	• 도로교통법 제10조에 의거 지방 경찰청이 설치한 횡단보도 ※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. ①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한다. ②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횡단보도 표시만 한다. ③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되어 안되어 횡단보도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한다. ④ 횡단보도는 육교,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해서는 안된다.	• 아파트 단지나 학교, 군부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 설치된 경우는 제외 ※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있고 표지판 미설치시 횡단보도로 인정 추세(사실상 횡단보도로 간주)

4. 사고사례의 유형

가. 횡단보도에 해당하는 사례

(1)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어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.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점멸신호

또는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을 때 보행자가 계속 진행하거나 되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.(대법원 86도 549. 86. 5. 27. 대법원 87도 471. 87. 7. 16)

- (2)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에 해당된다.(대법원 90도 761. 90. 10. 16)
- (3) 고속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난

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정상 횡단하던 중 질주하여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벗어났다 그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, 사고 지점이 비록 횡단보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된다.

- (4) 횡단보도 신호기가 일시 고장난 상태로 횡단보도 표시만 되어 있는 경우에도 횡단보도에 해당된다.(대법원 89도 1696. 90. 2. 9)

나. 횡단보도로서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

- (1)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일 때 횡단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
- (2)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 신호가 변경되어 중앙에 서있던 중 일어난 사고
- (3) 횡단보도의 신호가 변경되어 되돌아가던 중 일어난 사고

다. 피해자의 구체적 행동에 따른 적용례

구 체 적 상 황	적 용 법 조
① 횡단보도전 보도에서 신호 대기하다 출발 보행 속도가 느려 다 건너기전 신호가 변경되며 발생한 사고	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
② 횡단보도전 보도에서 신호 대기하다 출발하여 건너던 중 보행신호가 짧은 신호가 변경되며 발생한 사고	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
③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로 된 후에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	안전운전 불이행 적용(현저하게 뒤늦은 횡단보도 진입의 경우)
④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	안전운전 불이행 적용
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될 때 진입하여 건너던 중 발생한 사고	안전운전 불이행 적용

- (1)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
- (2) 손수레를 끌고 건너고 있던 중(90도 761)
- (3) 자전거, 오토바이를 끌고 건너고 있던 중

5. 횡단보도내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법원 태도

통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, 사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은 일부 피해자의 특별한 행동의 경우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행자로 볼 수 없다 하여 특별법 적용을 배제하는 추세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.

가. 보행자 보호의무를 적용하는 예(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)

나. 보행자로 볼 수 없는 예

- (1) 횡단보도에 누워 있거나, 앉아 있거나, 엎드려 있는 경우(93도 1118)
- (2)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중
- (3) 횡단보도 내에서 싸우고 있는 중
- (4)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는 중
- (5) 횡단보도 내에서 적재물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등
- (6) 보도에 서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넘어진 경우 등 ☹